제1편 용어의 정의 및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지급금: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피보험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 2. 단기요율 :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 3.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4. 무면허운전(조종):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 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 니다.
- 5. 무보험자동차: 피보험자동차가 아니면서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 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 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이동장치, 「농업기 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 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 배상॥」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 라.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는 제외)
-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 가. 부분품: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 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조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 나. 부속품: 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 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이 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¹⁾하거나 장비⁽¹²⁾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 (4) 부속기계장치
 - 다. 부속기계장치: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등록 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기계장치를 말합니다.
 - (*1)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 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2) **장비**: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 (*3)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 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송수신장치(예: 하이패스 단말기)
- 7. 운전(조종): 「도로교통법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 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8. 운행: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 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2조 제2호)
- 9. 음주운전(조종):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조종)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10.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11. 자동차보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재(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 가. 기명피보험자: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보험계약자 가 지정하여 보험증권의 기명피보험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나, 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라. 사용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 마. 운전피보험자: 다른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친족피보험자, 승낙피보험자, 사 용피보험자를 말함)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 함)를 말합니다.
- 14. 피보험자동차: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 15.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가. 피보험자의 부모: 피보험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 나. 피보험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 합니다
 - 다. 피보험자의 자녀: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 16. 휴대품, 인명보호장구 및 소지품
 -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 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 나, 인명보호장구: 외부충격으로부터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하는 특수기능이 포 함된 것으로「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2조에서 정하는 승차용 안전모 또는 전용의류(")를 말합니다.
 - 다.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²⁾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 품을 말합니다.⁽¹³⁾
 - (*1) **에**: 바이크 전용 슈트, 에어백 등(라이더자켓·팬츠·부츠 등 이와 유사 한 일반의류는 제외)
 - (*2) **정착**: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3) 에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테이프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 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 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

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8 보험가액

- 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 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나, 보험계약 체결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 19. 마약·약물운전: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제2조(개인용자동차보험의 구성) ①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은 「대인 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의 6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② 보험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합니다.
 - 1, 의무보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에 의해 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자 동차보유자는 「대인배상 I 과 「대물배상』「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 도에 한함)을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임의보험: 의무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 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개인용자동차보 험에서 보상하는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배상책임: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 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대인배상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 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에서 보상					
나.「대인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ㅣ」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다. 「대물배상」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에 보상				

2.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보장종목	보상하는 내용			
가.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			
다.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를 보상			

④ 자동차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후 사용하는 '자동차보험공동 물건 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구 분	내 용		
기본보험료	차량의 종류, 배기량, 용도, 보험가입금액, 성별, 연령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보험료		
특약요율	운전자의 연령범위를 제한하는 특약, 가족으로 운전자를 한 정하는 특약 등 가입시에 적용하는 요율		
가입자특성요율	보험가입기간이나 법규위반경력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특별요율	자동차의 구조나 운행실태가 같은 종류의 차량과 다른 경 우 적용하는 요율		
우량할인 · 불량할증요율	사고발생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유무 및 사고건수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제2편 개인용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내용

제1장 배상책임

제1절 대인배상 |

제3조(보상하는 손해) 「대인배상 I」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 「대인배상 I 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배상 I 의 피보험자로 봅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친족피보험자
- 3. 승낙피보험자
- 4. 사용피보험자
- 5. 운전피보험자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배상 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배상[[와 대물배상

제6조(보상하는 손해) ① 「대인배상Ⅱ」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배상Ⅰ」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②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 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 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1. 기명피보험자
- 2 친족피보험자
-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4. 사용피보험자
- 운전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 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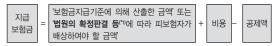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6.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 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 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 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 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 지보험자가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 8.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배상I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2.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가 피보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 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지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 3.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탑승자의 신체를 보호할 인명보호장구에 한하여 피 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

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 제9조(피보험자 개별적용)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8호를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정하는 보험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 제1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험회사는 이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보험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1. 「대인배상 | _: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 2.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제1항의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 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 한 필요 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 3 그 밖에 보험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1. 「대인배상II」: 「대인배상I ,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I 」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I ,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2, 「대물배상」: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모터, 구동용배터리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 (*1) **'법원의 확정판결 등**'이라 함은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또는 마약·약물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대인배상 II」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합니다.
 - 1. 「대인배상 |」: 「대인배상 |」 한도 내 지급보험금
 - 2. 「대인배상 II」: 1사고당 1억원
 - 3「대물배상」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 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 : 지급보험금
 -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 1사고당 5,000만원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마약·약물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중 발생한 다음의 사고, 다만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탑 승중일 때에 한합니다
 - 가. 날아오거나 떨어지는 물체와 충돌
 - 나. 화재 또는 폭발
 - 다. 피보험자동차의 낙하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 합니다.
- 제13조(피보험자) 「자기신체사고,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7조 「대인배상 || 의 피보험자
 - 2. 제1호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 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3.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 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 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 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 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 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

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I)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때에는 (별표5)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기준'의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6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사망, 부상, 후유장애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다만, '비용'은 '공제액'이 발생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급보험금 = 실제손해액 + 비용 - 공제액

- 1. 실제손해액은 〈별표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확정판결 금액으로써 과실상계 및 보상한도를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 2.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 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I』(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I」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 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다.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 4. 다만, 제3호의 '공제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 부상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지출한 치료비(성형수술비 포 합), 후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등급별 보험금액을 각각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경우에 이미 후유장애로 지급한 보험금이 있을 때에는 사망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인 기명피 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제17조(보상하는 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 험자동차로 인하여 생긴 사고로 상해" 이를 입은 때에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무자" 가 있는 경우에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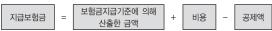
- (*1) 피보험자의 신체에 이상이 있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2)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제18조(피보험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부를 불문합니다)
 - 2.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이었는지 여 부를 불문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 4. 제1호, 제2호, 제3호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 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 4.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5.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 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 8.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 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9.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10.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배상의무자**⁽¹⁾일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들이 무보험자동차를 운전하지 않은 경우로, 이들 이외에 다른 **배상의무자⁽¹⁾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상해를 입은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 나.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피보 험자의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
 - (*1) '배상의무자'라 함은 무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죽 게 하거나 다치게 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 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20조(지급보험금의 계산)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한 개인형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손 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1.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1)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 가. 「대인배상」 $\sqrt[4]$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나.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 II」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다.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라.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 마.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제3절 자기차량손해

- 제21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 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는 실제 수리를 원칙으로 합니다.
 -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 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1) '경미한 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 (*2)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다른 자동차**⁽¹⁾와 충돌로 인한 손해. 단, 다른 자동차의 처량 등록번호와 운전자(또 는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에만 한합니다.
 - 2 피보험자동차 전부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1) '다른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 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 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기명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제22조(피보험자) 「자기차량손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차량손해」에 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 3. 지진, 분화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 4.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 5.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 하니다
 - 가. 임대차계약(계약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 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 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 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 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 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
- 6.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7.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보상 합니다
- 8.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 9. 피보험자동차의 일부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인한 손해
- 10.동파로 인한 손해 또는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직접 관련이 없는 전기적, 기계적 손해
- 11. 피보험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12 피보험자동차를 운송 또는 싣고 내릴 때에 생긴 손해
- 13. 피보험자동차가 주정차중일 때 피보험자동차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타이어나 튜브의 물리적 변형이 없는 단순 오손의 경우는 제외)
 - 가. 다른 자동차가 충돌하거나 접촉하여 입은 손해
 - 나. 화재. 산사태로 입은 손해
 - 다.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1)로 인한 손해
 - (*1) '가해자가 확정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에 장착되어 있는 타이어나 튜브를 훼손하거나 파손한 사고로, 경찰관서를 통하여 가해자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는 제외)의 신원이 확인된 사고를 말합니다.
- 14.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또는 마약·약물 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손해
 - 가. 보험계약자, 기명피보험자
 - 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해 피보험자동차를 빌린 임차인(*)
 - 다.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감사 또는 피고용자(피고용자 가 피보험자동차를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함)를 포 함합니다.

제24조(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자기차량손해」의 지급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은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 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나. 피보험자동차의 손상을 고칠 수 있는 경우에는, 사고가 생기기 바로 전의 상

- 태로 만드는데 드는 수리비, 다만, 잔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값을 공제합니다.
- 다. 피보험자동차를 고칠 때에 부득이 **새 부분품**⁽¹⁾을 쓴 경우에는, 그 부분품의 값과 그 부착 비용을 합한 금액. 다만, 엔진, 미션 등 **중요한 부분**⁽²⁾을 새 부 분품으로 교환한 경우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 라. 피보험자동차가 제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칠 수 있는 가까 운 정비공장이나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곳까지 운반하는데 든 비용 또는 그 곳까지 운반하는 데 든 임시수리비용 중에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 상하여 드립니다.
- (*1)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 받은 부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가해자불명사고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특별약관에 따라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에 따라 수리비의 일정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2) '중요한 부분'이라 함은 엔진, 미션, 캐빈, 적재함, 바디 및 전기차의 모터, 감속기, 구동용 배터리 등 중요한 부분품을 말합니다.
- 1) 비용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3.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동차에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야 할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 4. 대물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시 사고 당사자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자기차랑손해, 담보로 보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기차랑손해, 담보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달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여 드리며, 자기부담금을 부탁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우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 상대 당 '도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가지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상대방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회사가 구상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회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이미 부담한 자기부담금과 실제 손해 액에서 당해 구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전제로 산정된 자기부담금과의 차액을 피보 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자 기부담금은 최소 자기부담금 이상으로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수리 또는 대용품의 교부로써 보험금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상한 손해가 전부손해⁽¹⁾일 경우 또는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 이 보험가입금액 전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시 에 종료합니다.
- ④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동차의 전부손해^(**)에 대하여 보험금 전액을 지급한 경우에 는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이 경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을 때에는 보험 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피해물을 인수합니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피해물을 인수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피해물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가 보험회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1) '전부손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제3편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

제25조(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1.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 」, 「대물배상」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2.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 친 때
4.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한 때.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에는 도난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나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보험자동차가 회수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및 피보험자동차의 반환여부는 피보험자의 의사에 따릅니다.

제26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 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 이울'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피 보장의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 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 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 유 없이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역한 것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 해배상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 ,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보 험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보 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 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

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27조(제출 서류) 피보험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등	대인 배상	대물 배상	자기 차량 손해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1. 보험금 청구서	0	0	0	0	0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0	0	0	0	0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0	0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 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0		0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0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 II」 또는 공제 계약의 유무 및 내용					0
7.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 배상॥」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 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 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0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 시 말소 사실증명서			0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 시 이전서류 전손사고 후 폐차 시 폐차인수증명서		0	0		
9.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 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 검ㆍ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 리 개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 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 개시 전 자동차점 검ㆍ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 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 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0	0	0	0	0

- 제28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 약 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보험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 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 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 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에 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 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 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

- 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보험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보험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7조 (제출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 제29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제30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 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보험금을 지급할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보험회사가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 (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①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제31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보 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0	0
2. 손해배상청구서	0	0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0	0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 서류 등	대인배상 ·	대물배상
4. 그 밖에 보험회사가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사진 등,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회사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ㆍ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 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0	0

- 제32조(가지급금의 지급)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 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 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 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보험회사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 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 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31조(제출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보험금의 분담 등

제33조(보험금의 분담)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분담합니다.

1. 이 보험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 손해액 X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2. 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피보험자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지 급보험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보험금을 각 피보험자의 배상 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 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 1,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보험금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할 때는 피보 현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자기처량손해」의 경우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또는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를 낸 경우
 - 나.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동 안에 사고를 낸 경우
 -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 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③ 피보험자는 보험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5조(보험회사의 불성실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①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 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보험계약 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 ② 보험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곤궁,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를 한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 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 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 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 제37조(공탁금의 대출) 보험회사가 제36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4편 일반사항

제1장 보험계약의 성립

- 제38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하고 보험회사가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할 때 '제1회 보험료(보험료를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 는 '보험료 전액(보험료를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이하 '제1회 보험료 등이 라 함)을 지급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 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가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계약이 성립되면 보험회사는 제42조(보험기간)의 규정에 따라 보험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경 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 제39조(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한 경우 보 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고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통신판매 보험계약**^{*1)}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1. 사이버몰(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사이버물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 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약관을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모집하는 경우: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 간, 계약 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보험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 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세청약서 부본)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보험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1. 서면교부
 -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④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제외합니다.
 -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약관 및 보험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드리지 않은 경우
 - 2. 보험계약자가 청약을 했을 때 보험회사가 청약 시 보험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 3.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2)을 하지 않은 경우
 -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받은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1) '통신판매 보험계약이라 함은 보험회사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2)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 제40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보험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 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 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
 - 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본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회사가 보험모집과정에서 제작·사용한 보험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41조(청약의 철회) ① 일반금융소비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서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린 것에 관해 다툼이 있으면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 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전문금융소비자(*2)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의 무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 3.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보험계약
 - (*1) '일반금융소비자'라 함은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2) '전문금융소비자'라 함은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 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 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④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 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 실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은 보험 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⑥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① 보험회사가 제5항의 보험료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보험기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보험기간은 다음 과 같습니다.

구 분	보험기간
1. 원칙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의무보험(책임공제를 포함)의 경우 전(前) 계약의 보험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구 분	보험기간
2. 예외 : 자동차보험에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보험
처음 가입하는 자동	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
차 (*1) 및 의무보험	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1)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보험계약을 양수인이 승계한 후 그 보험기간이 종료되어 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43조(사고발생지역) 보험회사는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 의가 필요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 피보험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
- 3.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연령 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보험료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보험회사는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 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 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더 받 거나 돌려주고 계약을 승인하거나,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 2. 피보험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②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알고 있는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 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2.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출·퇴근 시 승용차 함께 타기 등)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

- 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 는 보험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되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야 합니다.
- 6. 보험회사가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보험회사가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 데 현력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보험계약의 변동 및 보험료의 환급

- 제47조(보험계약 내용의 변경) ①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보험계약자, 다만,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권리·의무를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 2.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 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보험료가 변경된 경우 보험계약 자에게 보험료를 반환하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 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 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 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 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 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에는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 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은 양수인으로 봅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되기 전의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후의 보험계약자에게 추가보험료를 청구합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 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 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 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 ②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 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보험요율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남는 보험료를 돌려드리거나 추가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을 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 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시) 일할계산의 사례 기납입보험료 총액 × 해당기간 365(윤년 : 366)

-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 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51조(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보험계약자가 보 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 제52조(보험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①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은 다음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동차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 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49조(피 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 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 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치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 대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5. 이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의 일 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 6.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 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② 이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 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그 종 료일 다음날부터 보험기간이 개시되는 의무보험이 포함된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 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 나 또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제52조의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보험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
 - 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회사는 제54조(보험료의 환급) 제 3항 제1호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① 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 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 하지 못합니다.
 - 가. 보험계약을 맺은 때에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 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청약서의 기재사 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보험회사가 이를 승인하였을 때
 - 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맺은 날부터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 과한 때
 - 라.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계약전 알릴 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권 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마,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항이 보험회사가 위험을 측정하는 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 2.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맺은 후에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보험계약자가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 아닌 때에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3. 보험계약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4. 보험회사가 제4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2항,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보험료를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그 보험료를 내지 않은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 지 못합니다.
 - 가. 보험회사가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 부터 1월이 지난 경우
 - 나.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 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 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 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 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회사는 보상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아니합니다.

제54조(보험료의 환급 등) ①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보험료가 변경된 때에는 변 경 전 보험료와 변경 후 보험료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보험회사의 고의 · 과실로 보험료가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보험계약자가 적정 보험료를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보험회사는 이를 안 날 또는 보험계약자가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회사에게 고의 · 과실
- 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보험료를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 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3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4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보험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 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에 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 에 대하여 단기요윸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 3. 보험계약이 해지(제52조의2에 따른 위법계약 해지를 포함한다)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보험회사가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를 환 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 우를 말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보험의 해지는 제외)
- 2 보험회사가 제50조(보험계약의 취소) 또는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에 따라 보험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효력 상실
- ⑤ 보험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환급합니다.
- ⑥ 이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가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 리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 ⑦ 보험회사가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보험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 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 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 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제4장 그 밖의 사항

- 제55조(약관의 해석) ① 보험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 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56조(보험회사의 개인정보이용 및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① 보험회사는 제27 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정보와 제46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 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보험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 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 기명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형식, 연식
 - 2. 계약일시, 보험종목, 보장종목, 보험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보험료 할인·할증 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보험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 제57조(피보험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제58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보험금 등의 지급보장) 보험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지금을 보장합니다.
- 제59조(보험사기행위 금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피해자 등이 보험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60조(분쟁의 조정) ① 이 보험계약의 내용 또는 보험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보험 회사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 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 을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 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 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 쟁사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제61조(관할법원) 이 보험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보험회사의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 중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제62조(준용규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30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30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30
③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31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32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32
①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32
②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33
③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33
④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34
5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34
⑥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③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④ 가족과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	
5 기명피보험자 1인과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6 가족 및 지정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기 부부 및 지정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8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40
제3편 차량손해 보장 확대	/11
①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②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	
③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42
제4편 긴급출동서비스	43
①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	
[] 인화 건답물등 서미스 독일적원 ····································	
② 인화 신급불층 시미스 득월득한(한환경시증자) ************************************	41
제5편 기타	49
1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③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의 규정군동 취임담모 독혈약관 ④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⑤ 주행거리연동 특별약관 ····································	
©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추가 특별약관 ······	
기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	
8 전방충돌방지 장치 특별약관 ······	
E 20020-1 0/1 7272	00
⑨ 차선이탈방지 장치 특별약관 ····································	59

제1편 보험료 납입방법

1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 제1조(보험료의 분할납입)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 자가 보험료(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함)으로 분할하여 납입하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및 「대물배상」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 제2조(분할보험료의 납입방법) 보험계약자는 이 보험계약을 맺으면서 제1회 분할 보험료를 납입하고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부터는 약정한 납입일자 안에 납입하 여야 합니다.
-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부터 30일간의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납입최고기 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 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제1항 및 제2 항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서면으로 안내할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 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 제4조(보험료의 환급)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따라 보험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하여야 할 사고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이 미 받은 보험료에서 해지일까지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 제5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최고)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 일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 는 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 ② 위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함)의 카 드회원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며,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 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신용카드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이라 '특별약관'이라함)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정의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고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시점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간주합니다.

- 제3조(사고카드 계약) ①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보험자의 책임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위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상이한 카 드 등을 말합니다.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③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지정은행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납입하기로 약정 하는 경우에 이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보험료의 자동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때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횟수 및 금액으로 자동이체 분할납입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및 「대물배상」은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료를 분할납입할 수 없습니다.
 - ② 보험료의 자동이체 납입일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체일자(이하 '약정이체일'이라 항)로 합니다.
 - ③ 위 제2항의 약정이체일은 보험청약서상에 열거된 이체가능일자 중에서 보험료 납입기일 이후에 최초로 다가오는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를 자동이 체 납입할 경우의 초회보험료 약정이체일은 회사와 보험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책 임개시일자 이전의 이체일자를 말합니다.
 - ④ 지정은행계좌의 이체가능 금액이 회사가 청구한 보험료에 미달할 경우에는 보험료가 이체 납입되지 않습니다.
- 제3조(분할보험료의 납입유에 및 납입최고) ① 회사는 분할보험료가 약정이체일에 납입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이체일로부터 〈별표〉의 납입유예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유예기간 안에 생긴 사고는 보상합니다. 다만, 초회보험료에 대해서는 납입유예기간이 없으며, 책임개시일자 이전까지 초회보험료의 납입이 없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정이체일에 분할보험료가 이체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 납입유예기간 중에는 계속하여 이체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위 제1항의 납입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10일전까지 보험계약자에게 납입최고를 합니다.
 - ④ 납입유예기간 말일까지 분할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유예기간 말일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 제4조(보험계약의 부활) ① 이 특별약관 제3조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되고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해당 분할보험료를 납입한 때에는 이 보험계약은 유 효하게 계속됩니다.
 - ② 위 제1항의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부터 해당 분할보험료를 영수한 날의 24시까지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5조(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는 지정은행계좌의 번호 가 변경되거나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제2회 이후의 분할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납입병	미납입 보험료 }법	2회	3회	4회	5회	6회
비인	면속 2회납					1개월
	2회납	4개월				
연	3회납	2개월	4개월			
속	4회납	1개월	3개월	4개월		
납	5회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6회납	1개월	1개월	2개월	2개월	3개월

(주) 비연속 2회납의 납입유예기간 1개월은 2회보험료 미납입에 따른 납입유예기간 을 말합니다

제2편 운전가능자 제한

제1장 운전자 연령제한

① 운전자연령 만21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 여 운전할 자를 만21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1세 미만의 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 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대 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및 「자기차 량소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소해
-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및「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 동약관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 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 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1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21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② 운전자연령 만24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 여 운전할 자를 만24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4세 미만의 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 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대 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 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사랑손해」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 통약관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 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 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4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24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③ 운전자연령 만26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 여 운전할 자를 만26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26세 미만의 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 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대 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 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사랑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통약관 「대인배상॥」、「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26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26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④ 운전자연령 만30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 여 운전할 자를 만30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0세 미만의 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 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 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 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대물배상」、「자기사랑손해」및 「자기차랑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 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 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 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0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3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⑤ 운전자연령 만35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 여 운전할 자를 만35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35세 미만의 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 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 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 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사랑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 통약관 「대인배상II」、「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 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 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35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35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⑥ 운전자연령 만43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 여 운전할 자를 만43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3세 미만의 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 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대 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및「자기차 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처량손해」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 통약관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 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 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3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4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7 운전자연령 만48세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 여 운전할 자를 만48세 이상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48세 미만의 자가 피 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 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을 회사 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대 물배상」「자기신체사고」「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 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에서의 손해
 - 2.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사례사고」「자기차량손해」및「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3.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 동약관 「대인배상II」、「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 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 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동 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만48세 미만의 자**란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사고 일 현재 만4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제2장 운전자 범위제한

1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 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 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 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 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2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 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 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 통약관 「대인배상II」、「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 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 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③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 1인으로만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따라 보상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 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 통약관 「대인배상II」、「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 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 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동 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 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④ 가족과 형제·자매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를 포함합니다. 이 하 같습니다)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 (1)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2)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형제·자매**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부모(양부 모, 계부모 포함)가 동일(부모 중 1인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 기명피보험 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와 그 가족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함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

통약관 「대인배상॥」、「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5 기명피보험자 1인과 지정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 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를 포함하여 2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고지된 운전자 이외의 자 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 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 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 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6 가족 및 지정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의 가족 및 지정운전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이라 함은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및 지정운 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

- 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 의 손해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 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 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 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기 부부 및 지정1인 운전자한정 특별약관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와 그 배우자 및 지정운전자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이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보상합니다.

《용어풀이》

이 약관에서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호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 자의 배우자 및 지정운전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 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사람손해, 및 「자기차랑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 동약관 「대인배상」」,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 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 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동 법 시행령 제 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 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8 임직원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함)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함)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기명피보험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소속의 임직원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① 기명피보험자
- ②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 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 보험자동차를 유행하는 자
- ④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임 직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1.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및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손해
 - 2. 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피보험자 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던 중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손해 중에서 보통약관 제2편의 「대인배상 II 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 다만, 자동차 취 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고,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3조(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의무) ① 회사는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자가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임직원임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기명피 보험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운전자가 임직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사 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위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입증서류를 회사 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편 차량손해 보장 확대

① 기계장치에 관한 [자기차량손해] 특별약관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통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 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가 다인승 1종 · 2종승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에 장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보험증권기재의 기계장치」에 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량과 동시에 입은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

- 제1조(가입조건)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가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가 입할 수 있습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 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를 보 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릅니다.
 - 1.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피보험자동차에 통상 붙어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부속품과 부속기계장치는 피보험 자동차의 일부로 봅니다. 그러나 통상 붙어 있거나 장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 것 은 보험증권에 기재한 것에 한합니다.
 - 3. 피보험자동차의 실제 수리를 워칙으로 합니다.
 - 4.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 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② 위 ①의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타 **물체(*3)**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 또는 차량의 **침수(*4)**로 인한 손해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또는 풍력에 의해 차 체에 생긴 손해

《용어풀이》

- ① 이 약관에서 '경미한 손생'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③ 이 약관에서 '물체'라 함은 구체적인 형체를 지니고 있어 충돌이나 접촉에 의해 자동차 외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엔진내부나 연료탱크 등에 이물질을 삽입하는 경우 물체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이 약관에서 '침수'라 함은 흐르거나 고인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피보험자동차가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하며,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 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것은 침수로 보지 않습니다.
- 제3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명피보험자입니다.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보통약관 제23 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 제5조(지급보험금의 계산) 이 특별약관에서 지급보험금의 계산은 보통약관 제24조의 내용에 따릅니다.
-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③ 품질인증부품 사용 특별약관

- 제1조(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한 경우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동차의 단독사고(기해자 불명사고를 포함) 또는 일방과실사고로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또는「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 약관,에 의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품질인증부품을 사 용하여 수리한 때 OEM 부품 공시가격의 25%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품질인증부품'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라 인 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부품' 이란 자동 차 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말하며, 'OEM 부품 공시가 격' 이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제3항에서 말하는 대체부품인증기관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기명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보험회사는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연령 또는 범위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5조(보험금의 환입) ① 피보험자가 청구포기 등의 사유로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 제21조(보상하는 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제2조(보상하는

손해)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을 전액 회사에 돌려줄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한 금액도 동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② 품질인증부품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OEM 부품으로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 2조(보상내용)'에 의하여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돌려준 경우에 한하여 OEM 부품으로 재교환이 가능합니다.

- 제6조(적용배제)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 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 우에는 이 특별약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1, 품질인증부품을 공급할 수 없거나 공급 지연 등의 사유로 보험회사가 OEM 부품 으로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2. 품질인증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지급된 보험금 포함)이 보험가입금액(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초과하거나, OEM 부품을 사용하여 지급되는 보험금을 초과하는 경우
 - 3.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의한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지 않은 부품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수리하는 경우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4편 긴급출동서비스

1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 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긴급견인	 기.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1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1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비상급유	기. 피보험자동차가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운행용으로 1일당 1회에 한하여 3ℓ 를 한도로 연료를 주유하 여 드립니다. 다만, 3ℓ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 여 실비를 받고 주유하여 드립니다. 나.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 연료의 소진으로 운행이 정 지된 경우는 10㎞ 범위 내에서 가까운 가스총전소까지 견인 하여 드리며, 10㎞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구분	내용	
배터리충전	피보험자동차가 배터리(차량 Key 배터리, 연료전지 등은 해당되지 않음) 방전으로 시동이 불가능한 경우 시동이 기능하도록 조치하여 드리며, 배터리 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타이어 평 크수리 및 교체	기. 피보험자동차가 타이어의 지면에 닿은 타이어트레드 부분(접 지면)에 날카로운 물체에 의해 구멍이 뚫린 단순평크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타이어 펑크를 수리하여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타이어펑크 1개당 서비스 1회를 차감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야간,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경우 등 펑크 위치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2) Run-lai형 타이어, 튜브형 타이어 등의 펑크와 같이 펑크 수리 시 특수장비가 필요한 경우 (3) 타이어의 측면에 구멍이 뚫린 경우 (4) 자연 마모로 인한 펑크 또는 타이어가 찢어진 경우 (5) 기타 현장에서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나. 위 '가'목에 의해 타이어펑크 수리가 곤란한 경우 나. 위 '가'목에 의해 타이어펑크 수리 제공이 어려운 경우, 예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이어를 예비타이어 로교체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잠금장치해제	7. 피보험자동차의 열쇠를 분실하였거나 피보험자동차 실내에 열쇠를 두고 차문을 잠근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서비스를 요청하는 사람이 피보험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트렁크 잠금장치 해제 나. 외제 차량 및 최근 출시된 국산 차량 중 특수잠금장치(스마트키, 이모빌라이저 등)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의 장착 등으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잠금해제가 불가능한 차량의 경우 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별도의 전문업체에 잠금장치 해제를 의뢰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때 전문업체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피보험자의 부담으로 하며 보험회사는 통상적인 방법의 잠금장치 해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만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점금장치 해제서비스 전문업체의 서비스 제공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 잠금장치 해제를 위하여 부득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파손된 된 부분의 원상화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액 / 엔진오일 / 파워오일 보충	 가. 피보험자동차가 브레이크액, 엔진오일, 파워오일의 부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다만, 브 레이크액은 10 이내, 엔진오일은 20 이내, 파워오일은 10 이 내로 하고, 기준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량에 대하여 실 비를 받고 보충하여 드립니다. 나.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라디에이터캡 교환	피보험자동차의 주행 중 라디에이터캡의 파손 및 불량으로 엔진 과열시 라디에이터캡을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 캡의 경 우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브레이크등 / 전조등 교환	피보험자동차가 브레이크등, 전조등의 고장으로 운행이 불가능 한 경우, 해당하는 전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특수등의 경 우에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윈도우브러쉬 고무교환	우천시 또는 눈이 오는 때에 윈도우브러쉬 불량으로 피보험자동 차의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피보험자동차의 앞쪽 운전석 윈도우 브러쉬 고무부분을 새부품으로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윈도우 브러쉬 고무부분만 교환할 수 없는 경우 실비를 받고 원도우브 러쉬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휴즈 교환	 기. 피보험자동차가 휴즈단락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휴즈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엔진룸의 휴즈는 실비를 받고 교환하여 드립니다. 나.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현장응급조치	피보험자동차의 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현장에서 응급조치가 가능한 차량 고장에 대해서는 응급조치를 하여 드립니다. 다만, 부품의 정비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부동액보충	 기. 피보험자동차가 부동액 부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부족 분을 보충하여 드립니다. 나. 다만, 긴급출동 시 보유한 제품과 규격이 상이한 경우, 서비 스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벨트 교환	피보험자동차가 도로상 주행 중 각종 벨트(팬벨트, 파워벨트) 류의 절단 및 파손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벨트를 교환하여 드립니다. 다만, 현장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DOHC차 량, 2000cc이상차량 및 외제 차량은 긴급견인 서비스로 대체 하여 제공합니다.	
긴급구난	피보험자동차가 도로를 이탈하거나,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긴급 구난하여 드립니다. 다만, 별도의 구난 장비 없이 구난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에는 실비를 받고 구난하여 드립니다. 또한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차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무료점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목적으로 무료점검(엔진, 하체, 전기부 분을 말합니다)을 받고자 할 때에는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지 정 정비업체에 1~2일전에 예약 방문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검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피보험자동차의 정기검사대행서비스, 폐차대행서비스를 실비를 받고 대행하여 드립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특수한 구난을 한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2,5톤을 초과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 경우

- 2. 2대 이상의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구난한 경우
- 3. 구난작업을 시작하여 견인고리 연결 직전까지 소요된 시간이 30분을 초과 하는 경우
- 4. 외제 차량 및 2500cc 이상의 국산차량을 구난한 경우
- 5. 기타 별도의 구난장비(세이프티 로더 등)를 사용하여 구난하는 경우
- 6. 특수지역(산간, 해안, 갯벌 등)으로 일반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이 불 가능하여 특수장비(포크레인, 크레인, 트랙터, 사륜구동자동차 등)를 사용 하는 경우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 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긴급출동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 3.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 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 5.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 해(적재물의 손상, 멸실등)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폭설, 폭우,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 2.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경우
- 3. 활어차,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차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적재물의 중량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통상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 제6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 중 총 5회까지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그 횟수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 보험기간이 1년이며, 피보험자동차가 당사에 과거 직전 2년 동안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가입하고, 직전 2년 동안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 7회
 - 보험기간이 1년이며, 피보험자동차가 당사에 과거 직전 1년 동안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가입하고, 직전 1년 동안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 : 6회
 - 3.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의 경우: 3회
 - ② 제1항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이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에서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서비스는 횟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해지 됩니다.
 - 1. 보험약관 「대인배상 I」이 종료된 때
 -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횟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때

제8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2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친환경자동차)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가 친환경자동차인 경우에 한하여 가 입할 수 있습니다.

《용어풀이》

이 특별약관에서 **친환경자동차**라 함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 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합니다.

제2조(보상내용)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한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제공합니다.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긴급출동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긴급견인	기. 피보험자동차가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1일 1회에 한하여 현장조치 또는 150km 범위 내에서 가까운 정비공장까지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50km를 초과하여 긴급견인을 하는 경우 150km를 초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피보험자동차가 전장 5.5m 또는 중량 3톤 이상인 경우이거나, 처량의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에 제한이 생길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배터리 긴급 충전 지원	피보험자동차 고전압배터리(리튬이온전지 등) 방전으로 인하여 자력으로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계기판에 표시된 주행가능거리 가 10km 이내인 경우 1일당 1회에 한하여 충전기가 설치된 장 소까지 150km를 한도로 견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150km를 초 과하는 거리에 대해 발생하는 비용은 피보험자가 실비를 부담 하여야 합니다.	

②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다음의 서비스는 「한화 긴급출동 서비스 특별약관, 제 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해당 서비스에 따릅니다.

타이어 펑크수리 및 교체	잠금장치해제	브레이크액 보충
라디에이터캡 교환	브레이크등 / 전조등 교환	윈도우브러쉬 고무교환
휴즈 교환	현장응급조치	부동액보충
벨트 교환	긴급구난	무료점검
검사대행 및 폐차대행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 위의 자를 말합니다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에서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긴급출동 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 3.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제1호, 제2호, 제3호의 사유로 인해 긴급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 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 5. 긴급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해(적재물의 손상, 멸실 등)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기타 보험회사에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폭설, 폭우, 해일,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출동이 불가능한 경우
- 2. 대리운전을 요청하는 경우
- 3. 활어차, 적재정량이 초과된 화물차 등 이와 유사한 차량의 적재물의 중량 으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4, 제1호, 제2호, 제3호 이외에 통상적으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 단되는 경우
- 제6조(서비스의 한도) ①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횟수는 보험기간 중 총 5회까지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 그 횟수를 아래와 같이 정합니다.
 - 1. 보험기간이 1년이며, 피보험자동차가 당사에 과거 직전 2년 동안 긴급출동서 비스 특약을 가입하고, 직전 2년 동안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 한 경우:7회
 - 2. 보험기간이 1년이며, 피보험자동차가 당사에 과거 직전 1년 동안 긴급출동서 비스 특약을 가입하고, 직전 1년 동안 이 특별약관의 서비스를 제공받지 아니 한 경우:6회
 - 3. 보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계약의 경우: 3회
 - ② 제1항에서 동시에 2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에는 횟수를 각각 산정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이 특별약관 제3조(긴급출동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의 검사대행 및 폐 차대행 서비스는 횟수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7조(특별약관의 자동해지) 보험회사는 다음의 경우에 이 특별약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종료됨과 동시에 특별약관도 자동해지 됩니다.
 - 1. 보험약관 「대인배상 I」이 종료된 때
 - 2.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정해진 횟수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모두 제공한 때
- 제8조(특약보험료의 환급)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회사가 제공할 서비스가 생기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받은 보험료에서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특별약관 보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돌려드립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제5편 기타

1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 제2조(보상내용) ①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 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 생긴 사고로 인하여 손해 를 입은 때에는,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 II」, 「대물배상」및 「자기신체사고」 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 긴 사고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규 정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가 보상할 위 제항 또는 제2항의 손해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에 적용되는 보

《용어풀이》

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이 특별악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 간에는 동 일한 차종으로 봄)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험계약(정부보장사업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

- ①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 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 ② 기명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 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 상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 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업 (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 고로 인한 손해
 - ④ 피보험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⑤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⑥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써 입은 손해
 - ⑦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⑧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의 배 우자를 말합니다. 다만,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는 운전자를 한정하는 다른 특별약 관에 의하여 운전가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②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 | 」 및 「대물배상」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 제2조(보상내용)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와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통약관대인 배상 | 및 대물배상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대물배상의 경우회사가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은 1사고당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회사는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양도된 피보험자동차가 양수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2. 양도된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 유효한대인배상 I 및 「대물배상」에 가입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3. 보통약관 제42조(보험기간)의 「대인배상 I」및 「대물배상」 계약 성립시 설정된 보 험기간의 마지막 날 24시 이후에 발생한 손해
 - 4, 「대물배상」에서 양도인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범 위 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③ 위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보상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요율서에서 정한 불량할 증을 양수인에게 적용합니다.
- 제3조(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통약관 제 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규정에도 불구하고(단서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의 24시까지의 기간 동안은 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및 「대물배상」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고 양수인을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봅니다.
- 제4조(보험료의 청구 및 납입)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2조(보상내용)에 의해 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에 대하여는 단기요율로 계산한 해당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양수인은 위 제1항의 보험료의 납입을 청구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 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③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별약관

- 제1조(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동차가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그러나 「대인배상 I」에 대하여는 이 특별약관과 상관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6호, 제1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19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7호, 제2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5호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합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제2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6 인승 이하의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상 '여객자동차운송사 업'에 해당하는 운송을 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동

차가 구급용 자동채앰뷸런스) 또는 장애인 택시로서 유상으로 운송용에 제공하는 경우 발생한 사고는 보상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4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

-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정보(이하 '운행정보'라 함)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이하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를 장착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유행정보 확인장치를 조작하는 등 운행정보를 날조하여 보험료를 할인 또는 환급
 급받은 경우
 - 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료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료를 반 환하지 않은 경우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체결 후 제2항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이 특별약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무보험의 보험기간 중 도에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의 운행 정보를 송부하지 않은 경우
 - 2.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해지한 가입자로서 특약 가입기간 동안 비운행 약정요일에 1회 이상 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 중도 가입 이전에 이 특별약관을 3회 이상 해지한 가입자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이라 함은 피보험자동차가 주행하여 거리 이동이 있는 경우로 해당 비운행 약정요일 당일에 주행한 총 거리의 합이 1km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운행정보 확인장치**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요일별 운행 여부를 포함한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그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갖 춘 장치로서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의 기술인증을 부여받은 장 치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비운행 약정요일이라 함은 매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로서 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운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요일(07:00부터 22:00까지만 해당됨)을 말합니다. 다만, 운행하지 않는 요일이 법정공휴일(국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 및 근로 자의 날을 포함)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2조(특별약관 계약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책임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고 책임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 차의 차량정보,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모델명, 제품식별번호 및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② 책임개시일부터 15일 이전까지 위 제1항의 정보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에 전체 운행정보가 정상적으로 저장될 수 있도록 운 행정보 확인장치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

- 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험기간 첫날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행정보 확인장치 부착일이 보험기간 첫날 이후인 경우에는 부착일 부터 만료일까지의 운행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된 경우에는 교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 보험자동차의 교체) 규정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함)부터 7일 이내에 이 특 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를 송부하여 야 합니다.
- ④ 보험기간 중에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교체할 경우에는 교체 이전에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회사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하며, 기존 운행정보 확인장치를 분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체한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정보를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송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사고가 발생하여 회사로부터 운행정보의 전송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보를 송부하여야하며, 운행정보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 운행 중 사고로 간주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의 정보를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다른 자동차의 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 제5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의 해지)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 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운행정보를 기한 내에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 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6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운행정보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이 특별약관 계약 기간별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운행정보를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립니다.
 - 다만, 의무보험 가입기간 중도에 이 특별약관 해지 후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운행정보를 송부한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송금하여 드립니다.
 - 1.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3일 이하
 - 2.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일 이하
 - 3. 이 특별약관 계약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 이하
 - ②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가 위 제1항의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보험료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특별약관 가입기 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비운행 약정요일에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일수와 무관하게 보험료 정산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 3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7일 기간 동안
 - 2.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 ④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비운행 약정요일에는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 운행정보의 미전송 또는 지연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 2. 운행정보 확인장치의 불량·오작동, 운행정보의 훼손 등에 따라 운행정보를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 3 비운행 약정요일에 운행정보 확인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 4. 이 특별약관 제3조(운행정보의 전송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일을 초과하여 정보를 전송한 경우 초과 한 날부터 정보를 전송한 날까지의 기간 중 운행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해당 기간
- ⑤ 보험계약자는 위 제1항의 은행계좌 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 제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7조(비운행 약정요일의 변경) 비운행 약정요일은 보험기간 중 2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별표] 보험료 정산금액

구 분	적용보험료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보험료 제외)
정산금액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운행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적용보험료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로 정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 손해배상청구권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5 주행거리연동 특별약관

- ※「주행거리연동 특별약관.은「승용차요일제 특별약관.과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보험기간이 1년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자동차보험 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이면서 3개월 이상 남은 경우 이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할 수 있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의 다른 자동차보험 계약과 보험기간 만료일을 일치시키기 위한 계약의 경우 보험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이 특별약관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③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주행거리계 조작 또는 주행거리계 사진 위·변조 등 주행거리정보를 날조하거 나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송부하여 보험료를 할인 또는 환급 받은 사 실이 있는 경우
 - 2,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환급되는 특약을 가입한 후 할인 또는 환급 된 보험료의 추징사유가 발생했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④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체결 후 제3항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부터 1개월 이 내에 이 특별약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2조(계약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누적운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또는 자동차 검사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의 누적운행거리 확인세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회 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전 계약에서 주행거리연동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

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 험기간 중에 현장출동서비스,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피보험자동차를 정비 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피보험자동차 주행거리계의 주행거리정보 확인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가 정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후 계약에서 주행거리연동 특별약관 가입에 사용한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최종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④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된 날(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회사가 승인한 날을 말함)부터 교체(대체)된 날 이후 3일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정보 및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정보 보를 송부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의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변경 된 보험료를 정산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번호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자는 은행계좌번호가 변경되거나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4조(계약의 무효) ① 이 특별약관의 책임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제2조의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여야 하는 교체(대체)전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정보 및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정보를 기한 내 송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1항 내지 제 2항 또는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정보를 조작하거나 다른 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무효로 됩니다.
- 제5조(연간 주행거리 산출) 연간 주행거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 제2조(계약전 알릴 의무) 또는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하는 주행거리정보를 기준으로 다음의 산식 에 따라 산출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가 교체(대체)된 경우에는 교체(대체)전 피 보험자동차와 교체(대체)후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 및 경과기간을 각각 합산하 여 산출합니다.

연간 주행거리 = 일평균 주행거리 × 365

- ① 일평균 주행거리: (최종 주행거리 최초 주행거리) ÷ 주행경과기간
- ② 주행경과기간 : 최초 주행거리 확인일로부터 최종 **주행거리 확인일**까지 의 기간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연간 주행거리**라 함은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에서 최초 주행거리를 연간으로 환산한 주행거리를 말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주행거리 확인일이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촬영한 날짜 또는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주행거리정보를 확인한 날짜를 말합니다.

- 제6조(보험료 정산 환급 등)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의 의무사항)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주행거리정보를 지체 없 이 확인하여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보험계약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보험료 정 산금액을 송금하여 드리며, 정산금액은 연간 주행거리 실적에 따라 〈별표〉에서 정한 정산율을 기초로 하여 산정합니다.
 -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 받은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는 주행거리 확인방법에 따라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정보 재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등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행거리정보의 재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간 주행거리 7,000km를 초과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연간 주행거리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제2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동차의 최종 주행거리정보가 송부된 날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 또는 회사가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최종주행거리가 확인된 날(보험기간 만료일) 전에 최종주행거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 이전에 최종주행거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료를 정산하여 드립니다. 다만, 1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 동안의 이자금액(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까지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볔표] 보험료정산금액

연간 주행거리	정산금액
3,000km 0 ō}	적용보험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3,000km 초과 5,000km 이하	적용보험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5,000km 초과 7,000km 이하	적용보험료 × 보험증권에 기재된 정산율
7,000km 초과	없음

주) 적용보험료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제외합니다.

6 보험대차 운전 중 사고보상 추가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 기처량손해(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 포함)',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 시 해당 담보에 한하여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제2조(보상하는 손해) ①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피보험자가 보험대차를 운전 중 (주차 또는 정차 중을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 여 보험대차를 보통약관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또는 해당 특별약 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의 손해 중「자기차량손해은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가액과 보험대차의 사고가 발생한 곳과 때의 보험대차 가액 중 낮은 가액을 한도로 보 상합니다.
 - ③ 보통약관 「자기차량손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의 사고로 인한 보험대자 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해당 대여사업 자의 타당한 영업손해에 대해서는 보통약관 〈별표 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의 '4. 휴차료' 항목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④ 위 제3항의 영업손해의 경우 해당 보험대차 대여요금의 50%를 한도로 보상

합니다

- ⑤ 회사가 보상할 위 제1항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공제계약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단독사고 보상 특별약관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제3항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⑥ 위 제1항의 보험대차의 사고는 대여사업자로부터 보험대차를 인수한 때부터 보험대차 인정기간 마지막날의 24시를 한도로 보험대차를 반납할 때까지의 사고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대차 인정기간 만료일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료일까지의 사고만으로 합니다.

《용어풀이》

- 이 특별약관에서 '**보험대차**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그 피보험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대 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다른 자동차를 대차 받은 경우 그 자동차를 말합니다.
-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8조, 제14조, 제19조에서 정하는 사 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①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 또는 운전가능 연령 범위 이외의 자가 보험대 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② 피보험자가 보험대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보험대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제4조(피보험자)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할 수 있는 범 위의 사람을 말합니다.
-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7 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 특별약관

-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될 수 있습니다.
 -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 의 대상이 되는 경우

《용어풀이》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재(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 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교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 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 (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 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 험료·공제료를 말한다.

- ② 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다.
 - 1. 생명보험
 - 2. 상해보험
 -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 5. 「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 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 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기명피보험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 애인인 경우

《용어풀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제21조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 ① 이 특별약관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 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 증명서류"라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적용대상)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증명하여야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명피보험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증명서류를 제1항의 장애인 증명서류로 대체 할 수 있습니다.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 제3조(장애인 전용 보험으로의 전환)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제2조(증명서류의 제출)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제1조(적용대상)의 적용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경우.
 - 이 보험계약의 납입보험료를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 제4조(전환 취소) ① 보험계약자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으로의 전환 취소를 보험 회사에 요청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지체 없이 전환을 취소하여 드리며, 취소한 이후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일반 보장성 보험으로 표시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전환을 취소한 이후에는, 재전환을 요 청 할 수 없습니다.
 - ③ 최초 전환을 요청했던 당해연도에 제1항에 따라 전환 취소를 한 경우에는 당해연

도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아 닌 일반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됩니다

-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图 전방충돌방지 장치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최초 출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전방충돌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전방충돌방지 장치'라 함은 전방에 주행 중인 차량과의 거리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전방충돌 경고장치'(FCW, Forward Collision Warning System) 또는 장애물과 충돌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차량이 자동으로 제동하는 '자동 비상 제동장치'(AEB, Autonomous Emergency Braking)를 말합니다. 다만,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난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차량 출고 이후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추가적으로 장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날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및 제 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 지 않은 경우
- 회사가 전방충돌방지 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 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피보험자동차에 전방충돌방지 장치가 차량 출고 시 장착되었음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전방충돌방지 장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동차 계기판 또는 작동버튼 사진 및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 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 는 차량정보를 통해 피보험자동차에 전방충돌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진을 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전 방충돌방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작동시켜 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전방충돌방지 장치를 교체할 경우,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제1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전방충돌방지 장치 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2항의 가입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전방충돌방지 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 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9 차선이탈방지 장치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① 이 특별약관은 최초 출고 시 피보험자동차에 차선이탈방지 장치를 장착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차선이탈방지 장치'라 함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차로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를 알리는 '차선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또는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차로이탈을 방지하여 주행 차로로 자동 복귀하는 '차선이탈 자동복귀 장치'(LKAS, Lane Keeping Assist System)를 의미하며 차량 내부에서 그 기능을 확인 및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다만, 차량용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등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나 차량 출고 이후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장치를 추가적으로 장착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②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이 특별약관을 가입한 날부터 과거 3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및 제 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험료를 회사로 반환하 지 않은 경우
- 2. 회사가 차선이탈방지 장치의 장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한 사항을 제출하지 않 거나 허위 또는 조작하여 제출하는 경우
-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가입 시 피보험자동차에 차선이탈방지 장치가 차량 출고 시 장착되었음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에 일려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선이탈방지 장치 장착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동차 계기판 또는 작동버튼 사진 및 그 밖에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 여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전송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 는 차량정보를 통해 피보험자동차에 차선이탈방지 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이 확인되 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진을 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차

- 선이탈방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피보험자동차에 상시 작동시켜 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방지 장치를 교체할 경우,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 및 제1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의 차선이탈방지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남은 보험기간 동안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 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4조(특별약관 계약의 취소)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 제1조(가입대상) 제2항의 가입 제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성립한 경우 이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 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3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가입 시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차선이탈방지 장치가 파손 또는 훼손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 험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제5조(특별약관 계약의 무효)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특별약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이 특별약관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할인받은 보험료를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②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반환할 보험료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 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 별표와 붙임

〈별표 1〉 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 기준	62
〈별표 2〉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	70
〈별표 3〉 과실상계 등	73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74
〈별표 5〉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기준	75
〈별표 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76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76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77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2)	87

〈별표 1〉대인배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금 지급 기준

가. 사 망

각 보장종목별 !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장례비	지급액: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0 1111401011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공제)에서 본 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 한 금액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단, 사망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월평균현실소득액-생활비) × (사망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 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 하는 호프만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독자: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 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 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 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 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기 급하고 구시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 에서 제세액을 공 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어 풀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급,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구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 박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포함함.	

항목	지급 기준
3. 상실수익액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산식〉 [연간수입액 - 주요경비 - (연간수입액×기준경비율) - 제세공과 금]×노무기여율×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 에는 위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투자비율은 증명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수'로 함.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 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 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 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어 풀이) ① 이 보험계약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보험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 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재(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 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 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의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 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 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 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용어 풀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로 제출한 것을 말함.

항목	지급 기준
3. 상실수익액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200 급여오득시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
	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대한건설 협회, 제조부문: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 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 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이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19 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복무예정자 포함): 일용근로자 임금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 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증명이 가능한 자: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 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 이외의 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 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하며 피해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나 「수산업·어
	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 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함)에는 취업가능연한을 70 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 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 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항목	지급 기준
3. 상실수익액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 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5) 외국인 (7) 적법한 일시체류자 ^{**} 이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 ^{**} 의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 등로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1)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독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2)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호프만 계수: 법정이율 월 5/12%, 단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나. 부 상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시6시는에메6-	에메이프리티지엄리 (글프 7에서 리핀 리에티크 프리킨프 테에서 저답함.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7: 구조수색비: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의사의 진단 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실수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의 범위에서는 그 병실의 입원료로 지급함. 입원일수가 7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사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I	E 110 11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n	지그 기조		
항목	지급 기준		
1. 적극손해	(다) 피보험자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 자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		
	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치아보		
	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		
	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		
	분 중 12급 내시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자고 원자가 정해를 입는 필도 부터 4주를 경과한 후에도 의학적 소견에 따른 향후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른 진단서상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범위에 기		
0.01=1=	재된 치료기간 내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2. 위자료	기.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만원)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 200 5 75 9 25 13 15		
	2 176 6 50 10 20 14 15 3 152 7 40 11 20		
	4 128 8 30 12 15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보		
	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 내에서 부		
3. 휴업손해	상 위자료를 지급함. 7. 산정방법: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0. #BEM	가. 산성망법: 무상으로 인하여 유법암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		
	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어 풀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 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 (산식)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u>85</u>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휴업일수의 산정: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함.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		
	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며 피해자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		
	업인이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		
	업인일 경우(피해자가 객관적 자료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 한		
	함)에는 70세로 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다. 구립검조력의 전성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LD.	지고 기조	
항목	지급 기준	
3. 휴업손해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어 풀이) ① 가사종사자 라 함은 사고당시 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i>7</i>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싱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l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4) 소득이 두가지 이상의 자	,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 는 것으로 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	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	법과 동일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책임보험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	당하는 사 중 객관적인 증명사
	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ㅏ ㄸ느 사례트그 16.6그이 사
	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전	
	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어 풀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험회사가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	
	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하여 실	
	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	
	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 (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5. 그 밖의	위 1. 내지 3.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의	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손해배상금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	00원

(주) 책임개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의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후유장애

각 보장종목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배상 I 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급별 보상한도 내에 서 지급함.

항목	지급 기준	
1. 위 자 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7) 후유장애 판정 당시 ⁽¹⁾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 ⁽¹⁾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 ⁽¹⁾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 ⁽¹⁾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1)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 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 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만원)
	노동능력상실률	(전치· %, 단면) 인정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9% 이상 14% 미만	120 100
	5% 이상 14% 미년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한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 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2. 상실수익액	가. 산정방법: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단,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함) (산식) 월평균현실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 × (노동능력상실일부터 보험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보험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사고발생 작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안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사	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 연월자류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 거 1년간으로 함. 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

항목	지급 기준
2. 상실수익액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 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 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통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 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호프만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3. 가정간호비	기. 인정 대상 지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소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나)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마) '눈을 따라' 논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까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장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 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 는 퇴원일부터 항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별표 2〉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기준

항목	지급 기준
1. 수리비용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
	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 미한 손상⁽¹⁾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
	에 따라 복원수리하거나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하는데 소_
	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1) 경 미한 손상 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 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2) '품질인증부품'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제30조의5에 따라 인증된 부품을 말합니다.
	(2) 열처리 도장료
	수리 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량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 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 ¹⁰ 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 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 받는 화물자동차
	(*1)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2. 교환가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가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
3. 대 차 료	7.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
	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대여사 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 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급"의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 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항목	지급 기준
3. 대 차 료	(*1) '동급'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다만, 배기량, 연식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반영하기 어려운 자동채예: 하이브리드 차량, 다운사이징엔진 장착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크기(길이, 너비, 높이)를 고려합니다. (*2) '동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3)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이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밴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채(260cc 초교)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1)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2)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 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급의 35%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5%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5% 상당액 다. 인정기간
	(f)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 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 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 간은 인정하지 않음.
	(*1)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 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을 말합니다.
4 5 1 2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가. 지급대상
4. 휴 차 료	7. 시합내성 사업용자동채(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c) 86시표가 없는 6구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 차 기간을 곱한 금액

항목	지급 기준
4. 휴 차 료	다. 인정기간
	(1) 수리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
	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
	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5 000 4 11	
5. 영업손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법령에 정한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 업학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
	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시세	가. 지급대상
하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
	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7. 견인비용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여 이를 정비 가능한 곳까지 운반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피해물을 고칠 수 있는 정비공장 등까지 운반하거나 그 곳까지
	운반하기 위한 임시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필요 타당한 비용

〈별표 3〉 과실상계 등

항목	지급 기준
1. 과실상계	7.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배상 I」「대인배상 II」「대물배상」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며, 「무보험자동 차에 의한 상혜」의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배상 I」에서 사망보험금은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 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보험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기존관계비와 간병비의 함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 I」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함산액에 미달하면 「대인배상 I」 한도 내에서 치료관계비(임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배상 II」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사망보험금, 부상보험금 및 후유장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함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임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배상 I」에서 지급될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다만, 차량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별표)'에서 정한 상해급별 구분 중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임은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하기 전의 치료관계비가 「대인배상 I」 한도를 초과할 경우 보험회사는 과실상계 없이 우선 보상한 후, 그 초과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1) "채량운전자"에서 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 조에 의한 자동채(이륜자동차 제외), 군수품관리법에 의 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를 말 하며, 차량운전자에는 피해자 측 과실비율을 적용받는 자 를 포함합니다.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 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 손익상계	보험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
3. 동승자에 대한 감액	피보험자동차에 동승한 자는 〈별표 4〉의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에 따라 감액함.
4. 기왕증	기: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1)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책임개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의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위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별표 4〉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

1. 기준요소

동승의 유형 및 운행목적	감액비율 ^(*)
동승자의 강요 및 무단 동승	100%
음주운전자의 차량 동승	40%
동승자의 요청 동승	30%
상호 의논합의 동승	20%
운전자의 권유 동승	10%
운전자의 강요 동승	0%

(*1) 다만,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토요일, 일 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함)에 실제의 출·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 타기'를 실시한 경우에는 위 동승자 감액비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수정요소

수정요소	수정비율
동승자의 동승과정에 과실이 있는 경우	+10~20%

〈별표 5〉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기준

1)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상해 등급	보험가입금액
1급	1,500만원	8급	180만원
2급	800만원	9급	140만원
3급	750만원	10급	120만원
4급	700만원	11급	120만원
5급	500만원	12급	120만원
6급	400만원	13급	80만원
7급	250만원	14급	50만원

주) 1.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책임개시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의 경우에도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 에 대해서는 위의 지급기준을 적용합니다.

2) 후유장애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

장애	보험가입금액					
등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1급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2급	1,350만원	2,700만원	4,500만원	9,000만원		
3급	1,200만원	2,4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4급	1,050만원	2,100만원	3,500만원	7,000만원		
5급	900만원	1,8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6급	750만원	1,500만원	2,500만원	5,000만원		
7급	600만원	1,200만원	2,000만원	4,000만원		
8급	450만원	900만원	1,500만원	3,000만원		
9급	360만원	720만원	1,200만원	2,400만원		
10급	270만원	540만원	900만원	1,800만원		
11급	210만원	420만원	700만원	1,400만원		
12급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3급	90만원	180만원	300만원	600만원		
14급	60만원	120만원	200만원	400만원		

(주) 장애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애구분에 의함

〈별표 6〉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 7조, 8조 위반시 형사합의금 지원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 1. 「도로교통법」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 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 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하여 유전한 경우
- 4. 「도로교통법」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 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 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6,「도로교통법」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7. 「도로교통법」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 태에서 운전한 경우
- 9, 「도로교통법」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歩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 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11. 「도로교통법」,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12. 「도로교통법」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 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유전한 경우

〈부표〉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7조 제2항 관련)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 1〉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信	3천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 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 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 비를 동반한 상해 6. 착수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착수 손상을 동반한 청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 (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 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수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 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물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4.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 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5.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 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 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 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물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ㆍ좌창ㆍ괴사장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5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2급	1,500만원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 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2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증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흥 또는 흥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성(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주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건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괄 또는 경골 골절(대목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4급	1천만원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
		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상해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급별 4급	1천만원	4. 홍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홍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홍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상완신경총 본전전 손성(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상해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착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이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작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본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골이 골절을 말한다) 18. 골반절이 생해가 상해 경반을 관점한 상해 19. 골반골 관절이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골 관절이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존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3. 가골 또는 중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해한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6. 화상, 좌창, 괴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5급	900만원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울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u> </u>	900만원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 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대퇴골도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슬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공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 상해 22. 국관절의 장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교를 말한다)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성(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국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 건 파결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결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부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각치 이상의 취관로 설명 필요로 하는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7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화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화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화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6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700만원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건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건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건열 골절 13. 상완골 대결절 건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건열골절(의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발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반측 또는 외축 축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증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 탈구 모수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발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족관절 내축 또는 외축 축부인대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지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지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만원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 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 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 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宿	500만원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요수근관절 글절 및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쪽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쪽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회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300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화적 증상이 경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홍 또는 기홍이 발생하여 폐쇄식 홍관 삼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축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보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급별 8급	300만원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 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 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지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 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홍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홍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축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즉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그 밖에 건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급	200만원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 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 은 상해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절증

상해 급별	한도 금액	상 해 내 용
10급	200만원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만원	보고 보고 하는 상해 보고
12급	120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철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 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만원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단순 고막 파열 흥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흥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	50만원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 기 손상(장간막파멸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4. 6 TE MTNE	
영역	내 용
공통	7.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영역		내 용
공통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
		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두부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
		상·하 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
		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활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
		(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 한 뇌좌상을 말한다.
		인 되와경을 할인다.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
		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
		향 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
		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 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
		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
		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
		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흉·복투	1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 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
		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
71		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
		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주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 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
		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수손상으로 본다.
상·하지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 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핀고정술
		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작용하며, 도구 성목 및 성파식 편고성물 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
		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
I		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 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

영역		내 용
상하지	공통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
		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
		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
		이 경찰 선절 목근 경찰 물의 본경는 영합이지 않으며 경취 등 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선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
		로 판단한다.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더.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
		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러.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
		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머.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
		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
		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
		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글요인 경우를 할아버, 나물성 알면 곤성 이번 2개 무취 이성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상지	가. 상부관절수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경시	가. 성무원질문 파질는 외성성 파질인 인성인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최근도개 파글 개구에 따는 자능을 구지 않는다. 다. 6급의 견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당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
		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하지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
		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
		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
		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 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
		대 환경에 대하여 구물적 지료를 지행한 경우는 언내 환경 등
		ㅂ프노 건네.

영역		내 용
상하지 하지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탈구를 포함한다.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과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붙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별표 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관련)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13	1억5천만원	두 눈이 실명된 사람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총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 발신불수가 된 사람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급	1억3,500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 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1억2천만원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말하는 가능이나 음식물을 씸는 가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신경계통의 가능 또는 정신가능에 뚜렷한 장애가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산 녹막 장기의 가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산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4급	1억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판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9천만원	30년 기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한 나라
6급	7,5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수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급	6천만원	3.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 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않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중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중사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 근병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u>급별</u> 7급	6천만원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 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 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 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죽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 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흥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4,5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이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받거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11	3,800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ㆍ시아협착 또는 시아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소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9급	3,800만원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홍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2,700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않으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 데 지장이 있는 사람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 가락과 둘째 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업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물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2,300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 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업제손가락과 돌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업지살가락과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업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T2급	1,900만원	2.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건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모음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위해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급	1,500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10. 한쪽 받의 둘째손가락이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당하여 2개의 발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14급	1천만원	1. 한쪽 눈의 눈꺼물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 금액	신 체 장 애 내 용
14급	1천만원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 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 주의사항(비고) ♠

-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 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 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 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 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 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 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痹)가 인정되는 사람
-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 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 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 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 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 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된 경우를 말한다.